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연 월 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(안 제19조의4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73조의9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 중 “영 제73조의9제4항”을 “영 제73조의9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4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4(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)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.	제19조의4(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) ----- -- 영 제73조의9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